

## 임실군의회 입법예고 공고 2025-13호

임실군의회 양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청년 주거 안정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4월 15일

임실군의회 의장



### 1. 제정이유

임실군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 수준 향상과 자립기반 강화를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에 관한 규정 (안 제1조 ~ 안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규정 (안 제3조)
- 다. 청년 주거 정책의 기본원칙에 관한 규정 (안 제4조)
- 라. 청년 주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안 제6조)
- 마. 청년 주거 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바. 위탁 및 협력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안 제9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5년 4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1) 주 소: (55927)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의회(의회사무과)
- 2) 전 화: 063-640-2883, 팩스 063-640-2699
- 3) 전자우편: [charity81@korea.kr](mailto:charity81@korea.kr)

### 4. 제정안: 붙임

## 임실군 청년 주거 안정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 수준 향상과 자립기반 강화를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임실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최저주거기준”이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지표를 말한다.
3. “준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비주택”이란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 중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의 정의에 들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 주거 안정 및 청년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 주거 정책의 기본원칙)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청년 주거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년의 소득수준에 따른 주택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청년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준주택 및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하여 주거 환경 개선과 양질의 주택공급을 촉진할 것
3. 저소득 청년의 주거복지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임대주택 공급 등의 지원을 강화할 것
4. 청년의 자립과 지역사회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행복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창업 지원주택 등 다양한 청년 주택 공급을 장려할 것

제5조(청년 주거 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임실군 청년 기본 조례」 제 15조에 따라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임실군 청년 주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 주거 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주택 및 주거 복지 수요·공급에 관한 사항
3. 청년 주거 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청년 주거 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5. 청년 주거 환경 개선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청년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청년 주거 실태조사) ①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등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 주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최저주거기준 미달 청년가구에 관한 사항
2. 준주택 및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청년의 주거 정책에 대한 요구사항
4. 청년의 주택자금 조달 및 주거이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 주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청년 주거 사업) ① 군수는 청년의 주거 수준 향상과 주거 복지의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맞춤형 주택 공급 사업
2. 청년의 전월세보증금 용자 및 이차지원 사업
3. 청년가구의 임차료 지원사업
4. 청년 주거 환경 개선사업
5. 청년 주거 관련 정보 및 상담 제공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청년 주거 향상과 주거 복지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제1항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위탁)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거나 청년 주거 복지 수준의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군수는 중앙행정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주거 복지 관계기관·단체 등이 추진하는 청년주거 수준 향상 및 주거지원 사업에 대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10조(홍보) 군수는 주거 복지 관계기관·단체 및 언론 등과 청년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향상에 필요한 홍보를 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청년 주거 안정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임실군의회 양주영 의원

## 관련법령

### □ 『주거기본법』

**제17조(최저주거기준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고된 최저주거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적·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20조(주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이하 “주거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거 및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2. 가구특성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거실태파악을 위한 사항

②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신혼부부, 장애인 및 고령자
3.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등 청년층
5. 「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자산·나이 기준을 만족하는 단독 세대주 가구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